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제4회 이사회(임시)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후 6시~

2. 장 소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작은자리복지관 3층 창조홀)

### 3. 출석현황

가. 출석 이사 성명 : 신명자, 신명호, 이정근, 정원오, 이순남, 최정은

(이사 정원 8명 중 6명 참석)

나. 기타 참석자(감사) : 없음

### 4. 의결 및 심의안건

의안 번호	안건 명	표결 수				심의결과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제1호	법인 정관 개정의 건	6	0			원안 가결
제2호	법인 이사 연임의 건	5	0			원안 가결
제3호	2020년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6	0			원안 가결
제4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결정의 건	6	0			원안 가결
기타	법인 등기부등본 상 이사 주소 등재의 건	6	0			원안 가결

### 5. 안건 심의내용

○ 제1호 안건 심의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정관 개정안(13차)을 첨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

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표준정관에 근거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며 신명호 이사의 동의와 정원오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주요개정내용>

기존내용		개정내용	
제3조	시흥시 신천동 91-4	제3조	시흥시 시흥대로 1087(신천동)
제4조 (사업의 종류)	1. 각종 사회복지기관 설치운영 및 육성지도 2. 사회복지기관 위수탁운영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참여 3. 직업훈련시설 및 취업알선 기관 설치운영 4. 청소년 가정 및 저소득 근로자 후원 5. 노동자를 위한 교육활동과 취업알선 6.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업의 종류)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4조의 5에 의한 사회복지관 운영 2.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3.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5.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지역 아동센터 운영

			6.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7.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 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개시전 1월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개시 전 5일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회계년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8인(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이사 8인(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선임된 이사를 지명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이사 상호간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정수의 3/1(소수점이하는 버림)이상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 선임의 제한)	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신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9조 (임원의 직무)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면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삭제)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의 소집 등)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의 소집 등)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에 의결권과 표결권을 대리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에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에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33조 (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제34조 (상근 임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상근임직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 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7조 (잔여재산 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등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 (준용규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신설	제41조 (규정의 제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별표 2) 설립당시의 임원(부칙 제 3조 관련)	
신설	(별표 3) 법인이 사용할 인장(부칙 제 3조 관련)	

○ 제2호 안건 심의

- 최정은 이사의 임기가 8월 10일로 만료되어 연임 승인 요청함.

이정근 이사의 동의와 정원오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중 당사자인 최정은 이사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하여 의장이 승인되었음을 선언함.

<취임한 이사>

이사 최정은 (1965년 12월 20일생)

취임년월일 2020년 8월 11일

취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

성 명	선임기간	소속 / 직책
최정은	2020. 8. 11 ~ 2023. 8. 10 (3년)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제3호 안건 심의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산하기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제2차 추경), 작은자리은빛사랑채(제1차 추경), 정왕종합사회복지관(제1차 추경),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제1차 추경), 시흥시니어클럽(제3차 추경),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제2차 추경)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첨부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원오 이사의 동의와 신명호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 제4호 안건 심의

- 2020년 7월28일자로 계약만료되는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시흥시와 2020년 12월31일까지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정근 이사의 동의와 신명호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 기타 안건 심의

- 민법 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이사 주소를 등기부등본에 등기하고자 함.

○ 폐회 내용

- 의장은 다른 논의사항이나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오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 함

2020년 6월 18일

대표이사 신명자 (인)

이 사 신명호 (인)

이 사 정원오 (인)

이 사 이정근 (인)

이 사 이순남 (인)

이 사 최정은 (인)